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6명, 6급 4명) 중 5명(5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중 3명(5급 3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으로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등을 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감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3.3.~3.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6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원전환경과를”을 “원전환경과 및 온실가스감축팀을”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온실가스감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3.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4.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시행
5.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

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8.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9.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국내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10.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1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2.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13.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 방안 마련
14.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1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16.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17.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18.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19.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0.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2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 실적의 검증·인증
24.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실적 검증 관련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25.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6.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29.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0.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2.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33. 에너지·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34.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
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35.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6.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7.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
원

38.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9.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0. 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42조제3항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3 총계 “888”을 “89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881”을 “884”로 하며, 일반직 계 “869”를 “872”로 하고, 행
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

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7”을 “250”으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888”을 “89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82”를 “885”로 하며, 일반직 계 “870”을 “87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3”을 “276”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26”을 각각 “21”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

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6”을 “11”로 한다.

3.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별표 7 제3호 각 표 외의 부분 “2020년 4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통상질서협력관”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온실가스감축팀은 2023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온실가스감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온실가스감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④ (생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u>에너지 ·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u>	<u><삭 제></u>
27. <u>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 시행</u>	<u><삭 제></u>
28. <u>산업 · 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 ·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9. <u>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 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u>	<u><삭 제></u>
30. <u>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u>	<u><삭 제></u>
31. <u>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u>	<u><삭 제></u>
32. <u>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국</u>	<u><삭 제></u>

<u>내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u>	
33. <u>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u>	<삭 제>
34. <u>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u>	<삭 제>
35. <u>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u>	<삭 제>
36. <u>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 방안 마련</u>	<삭 제>
37. <u>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u>	<삭 제>
38. <u>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u>	<삭 제>
39. <u>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u>	<삭 제>
40. <u>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u>	<삭 제>

<u>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u> <u>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u>	
<u>4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u>	<u><삭 제></u>
<u>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u> <u>·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u>	<u><삭 제></u>
<u>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u> <u>·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4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u> <u>·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u>	<u><삭 제></u>
<u>45.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u> <u>·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46.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u> <u>·관리 및 감축 실적의 검증</u> <u>·인증</u>	<u><삭 제></u>

47. <u>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실적 검증 관련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관리·육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8. <u>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u><삭 제></u>
49. <u>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50. <u>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u>	<u><삭 제></u>
51. 「 <u>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u><삭 제></u>
52. <u>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53. <u>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54. 「 <u>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u>	<u><삭 제></u>

<u>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55.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u>	<u><삭 제></u>
<u>56.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u>	<u><삭 제></u>
<u>57.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u>	<u><삭 제></u>
<u>58.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u>	<u><삭 제></u>
<u>59.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 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u>	<u><삭 제></u>
<u>60.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 개발체제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u>	<u><삭 제></u>
<u>61.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u>	<u><삭 제></u>
<u>62.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u>	<u><삭 제></u>

수립

⑥ ~ ⑮ (생략)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생략)

② 에너지자원실에 에너지혁신
정책과·에너지효율과·전력산
업과·전력시장과·분산에너지
과·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
과·가스산업과·석탄광물산업
과·에너지안전과·원전산업정
책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
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
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
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
항

13.·14. (생략)

15.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
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⑥ ~ ⑮ (현행과 같음)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원전
환경과 및 온실가스감축팀을 -

---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14. (현행과 같음)

<삭 제>

16. <u>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개발</u>	<u><삭 제></u>
17. <u>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u>	<u><삭 제></u>
18. <u>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u>	<u><삭 제></u>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u>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u><삭 제></u>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23. <u>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④ ~ ⑮ (생 략)	④ ~ ⑮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⑯ 온실가스감축팀장은 다음 사</u>

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
한 사항

2.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
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
립·조정

3.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
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
선

4.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
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
의 수립·시행

5.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
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
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8.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

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9.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국
내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10.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
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1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
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2.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13.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
문별 할당 및 이행 방안 마련

14.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
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1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
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
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
행을 위한 제도 지원

16.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
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

리

17.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
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
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18.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
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
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
인력 양성

19.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
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
행

20.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
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
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
검·평가

2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
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
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

· 관리 및 감축 실적의 검증

· 인증

24.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실

적 검증 관련 민간 전문기관

의 지정·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25.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보급

26.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

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

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

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29.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

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

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

한 사항

30.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2.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3. 에너지·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34.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35.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6.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 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7.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 개발체제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제42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③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0년 4월 30일까지</u>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④ (생략)	<u>38.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u> <u>39. 에너지·산업 부문의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u> <u>40. 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u> 제42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2022년 4월 30일</u> ----- ----- -----.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8</u>	<u>891</u>	+3
1. 공무원			
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	<u>881</u>	<u>884</u>	+3
·	·	·	
·	·	·	
일반직 계	<u>869</u>	<u>872</u>	+3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47</u> · ·	<u>250</u> · ·	+3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8</u>	<u>891</u>	+3
1. 공무원			
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	<u>882</u>	<u>885</u>	+3
·	·	·	
·	·	·	
일반직 계	<u>870</u>	<u>873</u>	+3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73</u> · ·	<u>276</u> · ·	+3
--	-------------------------------------	-------------------------------------	-----------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6</u>	<u>21</u>	-5
일반직 계	<u>26</u>	<u>21</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u>16</u>	<u>11</u>	-5

